

② 고객사항 정보 입력 후 신청

주민대표 : 사업신청서(주민지원·마을지원) 한전 제출 또는 지원사업 홈페이지신청
① 한전사이버점 로그인후 지원사업(대표)으로 접속



② 사업목적, 총사업비비율 설정 후 신청

■ 지원사업 신청기간

- 주민직접 지원사업 : ~ 당해년도 9. 12
- 주민공동 지원사업 : ~ 당해년도 9. 30 ※ 매년 신청

■ 유의사항

- 원활한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 주민대표를 선출하여 신청기간 내 지원사업신청서 제출
 ※ 기간 내 주민지원사업 미 신청세대는 차년도 지원사업에서 제외.
- 지원세대 중 거주사실에 변동이 있을 경우, 한전에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파와 전자계

□ 전자파의 개념

- 원래 명칭은 전자기파로서 일반적으로 전자파(Electro-magnetic Wave)라고 부르며 전자파는 전계와 자계의 두 가지 성분으로 상호 조합하여 구성된 파동으로서 공간상에서 빛의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 주파수가 300,000Hz이상 높으며 먼 곳까지 전파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자계의 개념

- 전기가 흐르는 송변전설비 및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전계, 자계를 말하며 일반적인 전자파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보통 송전선로에서 50~60m 떨어지면 거의 측정되지 않습니다.



□ 세계보건기구(WHO) 연구결과

- ◆ 낮은 수준의 전자계에 대한 장기노출에 의해 암이 진전된다는 생체작용은 밝혀진 바 없음
- ◆ 장기노출 영향에 대하여 극저주파 자계와 소아백혈병의 관계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며, 자계노출 세기를 줄이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불투명함

즉, 낮은 수준의 전자계의 세기로 장기간 노출 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제연구그룹 연구에 의해 입증된 것이 없습니다.



문의처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600
 한전 전북본부 전력관리처 송주법 담당자
- F A X : ☎ 063-240-5578

남 원 · 김 제 · 완 주	☎ 063-240-5746
고 창 · 정 을 · 전 주	☎ 063-240-5586
군 산 · 익 산 · 담 양	☎ 063-240-5587
임 실 · 무 주 · 장 수	☎ 063-240-5519
순 창 · 장 성 · 진 안	

www.kepco.co.kr

345kV이상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345kV이상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 사업목적

345kV 이상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시행근거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정부)

■ 지원대상 345kV이상 가공 송전선로 또는 옥외변전소 주변지역 실거주 세대

구 분	765kV	500kV	345kV	비고
송전선로 주변지역	1,000m이내	800m이내	700m이내	송전선로 양측 바깥선 기준
변전소 주변지역	850m이내	800m이내	600m이내	

■ 마을별 지원금 산정방식

마을별 지원금은 전체 지원사업비를 송주법 대상 전국 마을의 지원계수의 합에 해당 마을 지원계수의 비율로 배분하여 산출

마을별 송변전설비 지원계수는 세대수, 설비계수, 전압계수, 지리적 특성계수, 송변전설비 특성계수를 반영하여 산출

※ 마을별 지원계수는 해당 마을을 경과하는 송전선로 및 변전소, 전압, 농어촌 및 도시지역 등에 따라 달라짐

마을 세대수는 지원사업을 신청한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

■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사업의 종류	비 고
주민지원사업	주민직접 지원 (50%이하)
주민복지, 소득증대, 육영사업 등	주민공동 지원 (50%이상)

■ 지원사업의 시행절차

(6월) 산업부, 지침 통보 → (7~10월) 사업자, 계획수립 및 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설명회 개최 등) → (11~12월) 계획심의 및 산업부 승인 →
(익년도) 지원사업 시행(리·통별)

지원사업의 종류

■ 주민 지원사업

사업의 구분	주민지원사업
사업시행자	한 전
지원대상자	주민의견 수렴기간 내 지원사업을 신청한 세대
시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별 지원금을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전기요금 보조금 지급◎ 전기요금 보조금 지급 후 지원금의 잔액이 발생한 경우 상수도, 난방비 등 신청·지급◎ 잔액 지급 미신청시 익년도 지원금으로 이월

■ 공동 지원사업

사업의 구분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그 밖의 사업
사업시행자	주민대표 5인 이상
시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대표와 한전 대행계약 협약서 체결◎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금 결제 전용카드 발급◎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지원사업 완료 후 원료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지원사업의 세부 종류

사업의 구분	사업 세부내용
주민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 전기요금의 보조나. 텔레비전 수신료, 유선료 및 인터넷 비용의 지원다. 상수도·하수도 및 난방비 등의 지원
주민복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 주택의 개량나. 목욕·건강·운동·미용·오락 시설의 건립 및 운영다. 문화행사 체험 및 관광의 실시라. 교통수단의 제공마. 지역도서관, 놀이방 및 공부방 등의 건립 및 운영
소득증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 태양광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나. 산림부산물 토비화의 지원다. 특화농작물·임산물의 재배·가공 및 판매의 지원라. 시설제조 재배·가공 및 판매의 지원마. 가축 사육 및 판매의 지원바. 특화 수산물 재배, 수산 양식 및 판매의 지원사. 농지매매 및 임대차 자금지원 등 영농규모화의 지원
육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 평생교육의 지원나. 농어촌학교의 운영다. 장학기금의 적립라. 기숙사의 제공마. 교육기자재 및 학교급식의 지원
그 밖의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 주민 건강검진의 실시나. 외지가족 통보서비스의 지원다. 농기구 공동 활용 지원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지원

주민대표 선정 및 대행

■ 주민대표 권한 및 책임

- 주민을 대표하여 한전과 지원사업 협의
- 마을에서 신청한 주민공동지원사업 시행 주관
- 지원사업 신청 및 시행, 사후관리 등 지원사업 총괄책임
- ※ 주민대표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주변지역 주민의 과반수 이상 동의시 연임 가능

지원사업 신청방법

■ 지원사업 신청절차

- ① 주민대표 선출
 - ② 세대별 주민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 ③ 세대별 주민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 ④ 마을 지원사업 결정
 - 주민직접 지원사업
 - 주민공동 지원사업
 - ⑤ 마을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 ⑥ 지원사업 시행
- 지원대상 주민의 과반수 동의로 선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 주민등록등본 매월 제출
 - 주민 → 주민대표, 한전
 - 주민회의
 - 주민대표 → 한전
 - 주민대표, 한전

■ 지원사업 신청방법 : 한전 홈페이지 참조

주 민 : 세대별 주민지원사업 신청서 주민대표에게 제출 또는 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 (https://tas.kepco.co.kr/tcs/nxui/TCS/index_portal.html)

① 한전사이버지점 로그인후 지원사업(개인)으로 접속

